

(예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회사명	[주]한국					대표자				한국인					
소재지	○○시 ○○구 ○○로 ○번길					업종				제조/ 음료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일자리유지 중소기업에 해당]					
대표전화번호	02-123-4567					담당자 전화번호				02-123-4568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3년도 수입액				미화(49,000,000)불					
2. 2024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분		인원				기준									
①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24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 명													
④ 청년근로자수		㉑ 2023년		35 명		• '23년 12월 말 인원을 기재									
		㉒ 2024년		37 명		• '24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㉓ 증가(㉒-㉑)		2 명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 (㉓*0.5))/①*100]		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유지 기업 : 0% 이상 일자리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1%, 2%, 3% 이상 									
※ 상시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연도	해당(직전)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 상시근로자수 (=⑬ ÷ 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2024년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274	12	106.2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별도첨부															
2024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p>※ 불입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 1~12월) 3. 사업계획서 등</p>															
관세청장 귀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상시근로자 수’ 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 관계(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인 사람
- ⑥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24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24년 12월 청년근로자 수가 '23년 12월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4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 이상 29세 이하 상시근로자

(다만,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연령 계산)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청년고용에 따른 기존우대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청년창업중소기업**(조특령§5①) : '17.1.1.이후 창업한(법인은 등기상 설립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인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계산방법 예시

2023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5)	(35)	(35)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12} = 98.7\text{명}$$

- 2023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2024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4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4.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24.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24.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근로자 수)	(3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 2024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12} = 106.2\text{명}$$

• 2024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5명 = 106.2명 - 98.7명

□ 증가비율 : 8.6% = $\frac{8.5\text{명}}{98.7\text{명}} \times 100$

- 8.5명 = 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times 0.5 = 1\text{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 106.2명 - 98.7명

□ 증가비율 : 11.3% = $\frac{11.25\text{명}}{98.7\text{명}} \times 100$

- 11.2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1.5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3년 대비 2024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 예시) 2024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23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4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①·② 평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 예시) ⑤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4.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24년 합병법인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 계산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12} = 68.3\text{명}$$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8.3명 = 68.3명 - 60명

- 증가비율 : 13.8% = (8.3명 / 60명) × 100